

식품산업과 WTO 도하개발아젠다

신성균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년 11월 9일부터 13일까지 페르시아만의 카타르(Qatar)의 수도인 도하(Doha)에서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제4차 각료회의가 개최되었다. 격년으로 개최되는 각료회의는 WTO의 최고위 회의로서 지난 2년 간의 WTO의 작업을 점검하고, 향후 작업에 대한 논의를 주의제로 하고 있다. 제4차 각료회의에서는 2002년부터 3년간 새로운 협상(도하개발아젠다, Doha Development Agenda)을 진행하여 2005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할 것을 명시하고 협상감독기구로 무역협상위원회(Trade negotiations Committee, TNC)를 2002년 1월 31일 이전에 설치할 것에 합의하였다.

협상의 의제로는 비농산물 시장접근, 농산물 및 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반덤핑, 보조금에 관한 기존 규범 개정, WTO 규범과 다자환경협약(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의 무역조치와의 관계 등 환경 일부 분야와 개도국 지원을 위한 이행문제 등을 포함하기로 합의한 바 있으며, 추가로 투자, 경쟁, 무역원활화, 정부조달의 투명성, 전자상거래, 지적재산권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검토를 거쳐 2003년에 개최될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재협상 개시의 결정과 협상의 범위를 볼 때 '95년 발효된 WTO협정문의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본 고에서는 식품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하각료회의선언문과 도하개발아젠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1. WTO 일반

WTO는 '86년 우루과이에서 합의하여 개시된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하여 GATT 1947(Gen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1947)협정을 대폭 개정하면서 설립된 기구이다. 이전의 GATT 1947은 상품 무역의 원활화를 위한 일반 원칙과 일부 세부 규정만을 정하고 있었다(표1). 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 당시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RIPS협정),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 등이 새로 제정되면서 명실상부한 상품, 서비스 및 지적재산권에 대한 전반적인 무역 규범 기구로 확대되었다.

WTO의 기본 개념은 관세만이 무역을 관리하는 방법이며, 회원국간과 외국과 국내 산간의 차별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누구나 관심있는 사람은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측 가능성은 투명성의 확보, 수입에 대한 물량 제한 철폐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표 1. GATT의 협상

년 도	협상장소/통칭명	주요안건	회원국
1947	스위스 제네바	관세	23
1949	스위스 Annecy	관세	13
1951	영국 Torquay	관세	38
1956	스위스 제네바	관세	26
1960-1961	제네바/Dillon Round	관세	26
1964-1967	제네바/Kennedy Round	관세, 반덤핑 62	
1973-1979	제네바/Tokyo Round	관세, 비관세조치, Framework 협정	102
1986-1994	제네바/Uruguay Round	관세, 비관세조치, 규정, 서비스,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의류, 농업, WTO 설립 등	123

출처: WTO 홈페이지(www.wto.org)

2. 제4차 WTO 각료회의

제4차 WTO 각료회의는 총 42명의 우리나라 대표단을 포함하여 142개 회원국, 옵서버 국가 및 국제기구 대표 등 4,500명의 대표와 기자단 750명, 비정부기구(non-government organization, NGO) 대표 650명이 참석한 가운데 뉴라운드 출범과 중국 및 대만 가입 공식 승인 등의 안건으로 개최되었다.

제4차 각료회의에서는 각료회의선언문(Ministerial Declaration, WT/MIN(01)/DEC/1), 공중보건과 무역관련 지적재산권협정에 관한 선언문(Declaration on the TRIPS Agreement and public health, WT/MIN(01)/DEC/2), 이행관련 사안 및 고려점-결정(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Decision, WT/MIN(01)/DEC/17) 및 보조금, EU와 ACP국가¹⁾간의 협력에 대한 유보 결정, EU의 바나나 수입에 대한 절차 결정 등 6종의 문서가 합의되었다. 선언문들에는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등 WTO의 향후 주요 작업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시장접근,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및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수산보조금, 지역협정 관련 기존협정의 규정은 명확한 협상대상으로, 투자, 경쟁정책 등 선언문 해석상 이견 가능한 부분으로 남았으며, 환경부분은 검토작업대상으로 결정하였다.

또한 100여개의 이행문제에 관한 사안 중 약 절반에 대하여 해결방안에 대한 결정을 채택하였으며, 나머지 문제는 분야별 향후 작업계획에 따라 처리하기로 하였다. 협상은 2002년 1월부터 개시하며, 종료는 2005년 1월 1일까지 일괄타결방식으로 실시할 것에 합의하였다.

2.1 각료선언문

각료회의 선언문(WT/MIN(01)/DEC/1)은 작업 프로그램, 작업 프로그램의 기구와 관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의 간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행문제와 고려점

협상대상 분야의 이행문제는 협상을 통하며, 그 외의 분야의 이행문제는 관련 산하 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그 결과를 2002년 말까지 무역협상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1) 아프리카, 카리브 및 태평양 46개국 기구

이행문제와 고려점의 상세한 내용은 “이행관련 사안 및 고려점-결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농업에 관한 협정

시장원리에 의한 공정한 무역을 위하여 가공 식품 및 식품원료의 양허 관세율 등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으며, 2003. 3.31.까지 협상방식(modalities)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각 회원국의 양허안 제출 시한은 5차 각료회의(2003년 하반기 개최 예정) 이전으로 하며, 협상종결은 2005년 1월1일로 예정된 도하개발아젠다 협상 종결과 일치하도록 합의하였다.

서비스협정

GATS 상의 서문, 4조, 16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협상을 계속함에 있어서 2001. 3. 28. 채택된 서비스협상 가이드라인(S/L/92)이 그 기초가 됨을 재확인하고, 이에 따라 각 회원국은 타 회원국에 대한 양허요구(안)을 2002. 6.30.까지, 자국의 양허(안)을 2003. 3.31.까지 제출할 것에 합의하였다.

비농업분야의 시장접근

농산물협상에 포함된 식품과 한약재 등을 제외한 전 품목에 대한 침투관세(tariff peaks)²⁾, 고관세(high tariffs) 및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³⁾문제를 포함하여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삭감 또는 철폐를 위한 협상을 개시하기로 하였다.

지적재산권

“TRIPS 협정과 공중보전에 대한 선언문(WT/MIN(01)/DEC/2)”을 채택하였음을 설명하고, TRIPS 협정이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위한 WTO 회원국의 공중보건 보호 권한을 지지하는 쪽으로 해석되고, 수행될 수 있도록 되어야 하며, TRIPS 협정과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간의 관계, 전통지식보호, 비위반제소, TRIPS 협정이 신기술발전을 수용하는 문제에 대해 TRIPS 이사회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다룰 것을 지시하였다.

무역과 환경

무역과 환경의 상호 보완성 제고를 위하여 WTO 기준 규범과 다자간환경협정

-
- 2) tariff peak(침투관세): 특정분야의 수입품에 대해 평균관세율을 크게 상회하여 부과하는 높은 관세
- 3) tariff escalation(가공단계별 관세율상승): 상품의 가공정도가 높아질수록 관세가 높아지는 관세 구조, 즉 원료품의 관세율은 무세 또는 저세율로 하고 가공도가 높아질수록 고관세율로 하는 관세를 경사구조를 뜻함. 이는 자원수입국의 가공산업을 보호하는 한편, 자원수출국의 가공업 발전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짐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MEA)의 무역관련 의무와의 관계 및 환경목적의 표시 요건 등에 대한 협상 개시에 합의하였다. 이 작업은 관련 WTO 규범의 명확화 필요성 여부를 파악하여 협상 필요성 등을 제5차 각료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다.

작업계획의 조직 및 관리

협상에 참가하는 국가는 WTO 회원국 및 가입협상 진행국으로 하며, 협상 종료시점은 2005. 1. 1.로 하며,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 진전상황을 점검할 것이며, 협상감독기구로 일반이사회 산하에 TNC를 설치하되, 2002. 1.31. 이전에 1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농업, 서비스, 공산품, 반덤핑협정, 보조금협정 개정(수산보조금 포함), 투자, 경쟁정책, 무역원활화, 정부조달투명성, 일부 환경 문제에 대한 협상을 일괄타결방식(single undertaking)으로 하되, 조기 합의사항은 조기에 시행하도록 합의하였다.

2.2 이행관련 사안과 고려점 - 결정(WT/MIN(01)/17)

각료회의 선언문에서 언급된 이행관련 사안과 고려점에 대하여는 다른 각료선언문으로 합의되었다. 이중 식품산업분야와 관련 있는 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SPS협정)

위생 조치를 도입할 때 단계적 적용이 가능한 조치인 경우 개발도상국에 대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며, 단계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당사국과 협의하도록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이행준비 기간을 6개월 부여하며, 조치를 적용하는 일정은 조치와 관련된 상황과 조치내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 외에도 “동등성 결정(Decision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4 of the Agreement on the Application of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G/SPS/19)” 이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며, SPS위원회에 매4년마다 협정의 이행과 운영 검토(2002년이 4년차임)를 개시하고, 최빈개발도상국의 관련국제기구 활동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을 촉구하고, 최빈개발도상국에 대한 재정·기술 지원을 제공토록 회원국에 촉구하였다.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Agreement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 TBT협정)

이미 TBT위원회에서 실시중인 제3년차 검토결과 보고서에 대한 작업을 계속하며, SPS조치와 같이 새로운 조치의 도입시 개발도상국에 대한 이행준비기간을 일반적으로 6개월 이상 부여하고, 관련 국제표준 제정 기구에 적극 참여하며, 이외에 개발도상국의 참여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TRIPS 협정

TRIPS 협정의 이행에 관한 GATT 1994의 제23조 1(b), 1(c)항(Nullification and Impairment, 위반사항)에 대한 범위 및 양상을 검증하여, 결과를 제5차 WTO각료회의에 보고하도록 하였다. 또한, TRIPS협정 해석에 대하여 국가간 이견이 있는 의무의 이행에 대한 조항의 해석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2002년 말까지 선진국은 영내 기업의 개발도상국 지원에 대한 각국의 인센티브 제도를 보고할 것을 요청하였다.

3. 농업에 관한 협정(Agreement on Agriculture)관련 협상

농업에 관한 협정(농업협정)은 도하개발아젠다와는 별개로 2000년 2월 WTO 일반이사회(General Council)에서 농업협정 제20조⁴⁾에 의거한 2000년 1월 1일 재협상이 기설정 의제(built in agenda, BIA)로서 개시되었음을 확인⁵⁾하고 이를 위하여 농업위원회 특별회의(Special Session of the Committee on Agriculture)를 구성기로 하였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2000년 3월 첫 특별회의가 개최된 바 있다.

따라서, 농업협상은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진행되며, 농업협정 제20조와 도하각료회의의 선언문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여야 한다. 농업협상의 주요 목적은 관세율, 국내보조금 및 수출보조금 등을 감소시키는데 있다.

4) 제20조(개혁과정의 계속) 회원국은 근본적인 개혁을 초래하는 보조 및 보호에 대한 실질적이고 점진적인 감축이라는 장기목적이 계속적인 진행과정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동 과정을 계속하기 위한 협상을 이행기간 종료로부터 1년전에 개시할 것에 합의한다.

가. 그 날까지의 감축약속 이행경험

나. 감축약속이 세계 농산물무역에 미치는 영향

다. 비교역적 관심사항, 개발도상회원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 공정하고 시장 지향적인 농산물 무역체제의 확립 목적 및 이 협정 전문에 언급된 그 밖의 목적 및 관심사항

라. 위에 언급된 장기목적이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추가적인 약속

5) WTO General Council, Minutes of Meeting, WT/GC/M/53(2000.3.15)

3.1 농업협정의 적용범위

농업협정의 대상 품목으로는 농업협정 부속서 1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 (1)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harmonized system, HS) 중 어류 및 수산가공품을 제외하고 1류로부터 24류까지와
- (2) 통일상품명⁶⁾
 - 코드2905.43 (만니톨)
 - 코드2905.44 (소르비톨)
 - 호33.01 (정유)
 - 호35.01-35.0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및 글루우)
 - 코드3809.10 (전분질을 기재로한 것)
 - 코드3823.60 (소르비톨, 2905.44의 소르비톨을 제외한다.)
 - 호41.01-41.03 (원피와 가죽)
 - 호43.01 (생모피)
 - 호50.01-50.03 (생사와 견웨이스트)
 - 호51.01-51.03 (양모와 동물의 털)
 - 호52.01-52.03 (원면, 면웨이스트, 카드 또는 코옴한 면)
 - 호53.01 (천연아마)
 - 호53.02 (천연대마)

즉 농업협상에서 다루는 제품의 범위는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을 제외한 모든 식품과 식품원료이다. 그러나 식품첨가물의 경우 앞에 명시된 코드2905.43 (만니톨), 코드2905.44 (소르비톨), 호33.01(정유), 코드3823.60(소르비톨, 2905.44의 소르비톨을 제외)을 제외하고는 농산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앞에 명시되지 않은 식품첨가물과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으로 분류되는 모든 제품은 비농산물 관련 협정에 적용을 받고 있다.

또한 농업협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양허 및 약속의 통합(제3조), 시장접근(제4조), 특별긴급수입제한규정(제5조), 국내보조의 약속(제6조)과 규정(제7조), 수출경쟁(제8조), 수출보조금(제9조)과 우회방지(제10조), 수출금지 및 제한에 관한 규율(제12

6) 괄호안의 품목만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님

조), 국내보조금(제13조), 위생(제14조), 특별 및 차등 대우(제15조), 최빈개발도상국과 식량 순수입 개발도상국(제16조), 약속이행의 검토(제18조), 협의 및 분쟁해결(제19조), 개혁과정의 계속(제20조)과 부속서로서 감축약속으로부터의 면제를 위한 기초(부속서 2), 보조총액측정치의 계산(부속서 3), 보조상당측정치의 계산(부속서 4) 및 제4조제2항(시장접근)과 관련한 특별 대우(부속서 5) 등이다.

3.2 각료선언문의 농업협정 협상

제4차 WTO 각료회의에서는 농업협정 협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우리는 121개국으로부터 제출된 많은 협상 제안서를 포함하여 농업협정 20조에 따라 2000년 초에 시작된 협상에서 이루어진 작업을 인식한다. 우리는 세계 농산물시장의 제한과 왜곡을 시정하고 방지하기 위한 보호에 대한 강화된 규범과 구체적인 약속을 포함하는 근본적인 개혁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공정하고 시장지향적인 무역체제를 수립한다는 농업협정에 언급된 장기목표를 상기한다. 우리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한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작업에 기초하고 협상결과를 미리 예단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시장접근의 실질적인 개선, 단계적 폐지를 목표로 하는 모든 형태의 수출보조의 감축, 무역왜곡적인 국내보조의 실질적인 감축을 목표로 한 포괄적인 협상을 추진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가 협상의 모든 요소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 되고 이행계획서와 협상할 적절한 규범에 구현되어,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하고, 개발도상국이 식량안보와 농촌개발을 포함한 자국의 개발차원의 필요성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우리는 회원국들이 제출한 협상 제안서에 반영된 비교역적 관심사항에 주목하고, 농업협정에 규정된 대로 비교역적 관심사항이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한다.

특별하고 차등적인 대우를 위한 규정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약속에 대한 세부원칙은 늦어도 2003년 3월 31일 이전에는 수립되어야 한다. 회원국들은 그 기본원칙에 입각한 종합적인 이행계획을 제 5차 각료회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상은 규범에 관한 것과 관련 법조문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전체 협상의제의 일부로서 협상이 종결되는 날에 끝난다.

이상과 같이 도하 각료회의 선언문에서 WTO의 장기적 목표는 공정하고 시장 친화적인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이를 위하여 시장접근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수출보조금을 감축시키거나 완전히 철폐하며 무역을 왜곡시키는 국내 지원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 및 차등대우를 할 것과 환경보호, 식량안보, 농촌개발과 같은 비교역적 사안도 고려할 것을 지시하였다.

3.3 농업협상에서의 의제

농업협정에 대하여 협상을 하는 특별회의는 2000년 이후 2001년 말까지 9회 개최되었다. 2001년 3월까지의 1단계(phase 1) 협상에서는 각 회원국이 자국의 입장을 개괄적으로 밝히는 수준에서 완료되었으며, 현재는 구체적인 주제별 논의인 2단계(phase 2) 협상이 완료되어 가는 시점이다. 농업협상은 서비스협정에 대한 협상과는 달리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수출국과 수입국간의 이견차이가 심하여 협상양식(modality)이 아직 합의되지 못하였으며, 도하각료회의에서는 2003년 3월 31일까지 양식개발의 완료를 지시하였다. 또한, 2003년 멕시코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각료회의까지 종합적 국가 양허안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또한 협상은 타 도하개발아젠다와 함께 2005년 1월 1일까지 완료하기로 하였다. 다음은 농업위원회 특별회의에서 논의중인 주요 의제이다.

수출보조와 경쟁(*export subsidies and competition*)

UR당시 우리나라는 수출보조에 대한 양해를 받지 않았으며, 총 25개국에서 식물성유(vegetable oil), 유박(oilcake), 설탕(sugar), 버터 및 버터오일(butter and butter oil), 탈지분유(skim milk powder), 치즈, 기타 유가공품 및 포도주 및 원료농산물에 대하여 양허받은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일과 꽃에 대하여 수출보조를 실시하였음을 WTO에 통보한 바 있다.

수출보조금에 대하여 일부 국가는 모든 수출보조금을 완전 폐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다른 일부는 감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개발도상국은 수출보조금이 국내와 시장 경쟁을 왜곡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다른 일부 개발도상국가는 수출보조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수입 개발도상국의 경우 수출보조금의 폐지 또는 감축으로 인한 국제가격 인상요인에 대한 우려를 표명

한 바 있다.

수출제한과 세금(Export restrictions and taxes)

수입국은 수출국에서 행하는 수출세 또는 수출제한이 식품공급을 혼란시킴을 지적하고, 이러한 조치를 금지하거나 감소시켜야 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케언즈그룹⁷⁾은 가공 단계별로 관세율을 높이는 경사관세(tariff escalation)의 감소와 연계하여 관세율의 감소를 제안하였다.

관세율

관세율 인하 방법으로는 전반적으로 일정한 비율로 감소시키고, 관세율이 높은 제품은 보다 높게 비선형 공식에 의하여 보다 많은 감소를 하도록 하고, 관세 쿠틀과 개발도상국 특별대우를 확대하는 등 콕테일(cocktail) 접근법에 의한 조정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국가의 첨두관세(tariff peaks)를 감소시키거나 제거할 수 있다. 한편, 일부 국가는 UR당시 사용한 개별 관세에 대한 최소한의 감소율을 정하고 평균량 감소를 택하는 방식을 활용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서비스협상에서와 같이 요구-제공(request-offer) 방식을 취할 것을 주장하는 국가도 있다. 또한, 일부 개발도상국은 관세감소율을 타국의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 감소와 연계하여 판단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신규 가입한 회원국, 개발도상국 및 체제 변환 중인 회원국에 대한 대우가 논의되고 있다.

7) The Cairns Group(17개국): 아르헨티나, 호주,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파라과이, 필리핀, 남아프리카공화국, 태국, 우루과이

관세율쿼터(tariff quotas)

관세율 쿼터는 수입순서대로 누적 양으로, 또는 수입 허가(import licensing)제 또는 기타의 기준에 의하여 일정량(쿼터량) 이하인 경우 낮은 관세를 부과하다가, 일정량을 초과하면 그때부터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관세율 쿼터는 UR 당시 우리나라(표 2)를 비롯한 38개⁸⁾국가에서 1,379개 품목에 대하여 실시할 것임을 양허 받은 바 있으며, 이중 562개 품목은 쿼터량 확대를, 5개 품목은 쿼터량 축소를 하고 있으며, 812개 품목은 양의 증감이 없다.

이러한 관세율 쿼터제도에 대하여 관세인하, 쿼터량 확대, 투명하지 못한 쿼터량 산출방법, 관세율 쿼터 관리를 위한 일반원칙 개발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논의의 결과 많은 회원국은 쿼터량을 결정하는 하나의 일반적인 방법은 없으며, 가능한 대부분의 수출국이 이러한 쿼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하며, 투명하여야 한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노랑상자(Amber Box)⁹⁾

농업협상에서는 국내 생산과 교역을 왜곡시킬 수 있는 허용되었으나 대부분의 보조 조치를 노랑상자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의 총량은 축소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8) Australia (2), Barbados (36), Brazil (2), Bulgaria (73), Canada (21), Colombia (67), Costa Rica (27), Czech Rep (24), Dominican Rep (8), Ecuador (14), El Salvador (11), EU (87), Guatemala (22), Hungary (70), Iceland (90), Indonesia (2), Israel (12), Japan (20), Korea (67), Latvia (4), Malaysia (19), Mexico (11), Morocco (16), New Zealand (3), Nicaragua (9), Norway (232), Panama (19), Philippines (14), Poland (109), Romania (12), Slovak Rep (24), Slovenia (20), South Africa (53), Switzerland (28), Thailand (23), Tunisia (13), United States (54), Venezuela (61) (괄호안 숫자는 쿼터 대상 품목수)

9) WTO에서는 보조(subsidy)를 상자(box)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으며, 교통신호등의 색에 따라 녹색(green)은 허가된(permitted), 노랑(amber)은 감축(slow down)과 빨강(red)은 금지(forbidden)로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농업협정에서는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는 빨강신호는 기본적으로 없으며, 제한된 생산과 관련된 보조를 파랑(blue)으로 표시하고 있다.

표 2. 우리나라의 UR 양허안의 관세율쿼터 품목

번호	품 목 명	HS Code
1	Milk cows (Pure-bred breeding)	0102.10.1000/2000...
2	Swine (Pure-bred breeding)	0103.10.0000
3	Fowls of the species Gallus domesticus	0105.11.1000/91.000
4	Meat of bovine animals ...Carcasses and half-carcasses	0201.10.00/20.000...
5	Meat of swine, frozen, Carcasses and half-carcasses	0203.21.0000, 0203.22.0000
6	Meat of fowls ... gallus domesticus, not cut, frozen	0207.21.0000/41.1000
7	Skim milk powder ... fat content not exceeding 1.5%	0402.10.1010/1090...
8	Whole milk powder ... fat content exceeding 1.5%	0402.21.1000/9000...
9	Other milk and cream, (Evaporated ...)	0402.91.1000/9000...
10	Whey powder	0404.10.1000/9000
11	Butter	0405.00.1000/9000
12	Birds' eggs (Not in shell/Not dried)	0408.99.0000
13	Natural honey	0409.00.0000
14	Powder of bones	0506.90.2000
15	Silkworm eggs	0511.99.9010
16	Apple trees, pear trees, peach trees, citrus trees	0602.20.1000/2000
17	Mulberry trees	0602.99.9030
18	Seed potatoes	0701.10.0000
19	Potatoes (Excluding seed potatoes)	0701.90.0000
20	Onions (Fresh or chilled)...	0703.10.1000, 0712.20.0000
21	Garlic (Fresh or chilled)...	0703.20; 0711.90.1000...
22	Fruits of the genus capsicum (Fresh or chilled)...	0709.60; 0711.90...
23	Beans (Dried /Seeds)...	0713.31.1000/9000...
24	Manioc (Fresh)...	0714.10.1000/2010
25	Manioc pellets (Dried)	0714.10.2020
26	Sweet potatoes (Fresh)...	0714.20.1000/2000...

(계속)

번호	품목명	HS Code
27	Roots and tubers (Excl. manioc, sweet potatoes, and arrowroots)	0714.90.9000
28	Chestnuts (In shell /Fresh or dried)...	0802.40.1000/2000
29	Pine-nuts (In shell /Fresh or dried)...	0802.90.1010/1020
30	Oranges (Fresh or dried)	0805.10.0000
31	Korean citrus (Fresh or dried)...	0805.20.1000/9000...
32	Jujubes (Fresh or dried)	0810.90.3000, 0813.40.2000
33	Green tea, not fermented packings < 3 Kg	0902.10.0000/20.9999
34	Ginger	0910.10.0000
35	Rye (For seed)	1002.00.0000
36	Malting barley	1003.00.1000
37	Unhulled barley...	1003.00.9010/9020...
38	Oats (For seed)	1004.00.0000
39	Maize (Corn /For seed)...	1005.10.0000, 0712.90.2090
40	Maize (Corn /For feeding)...	1005.90.1000/2000...
41	Rice in the husk - ST-Annex 5	1006.10.0000/20.1000..
42	Grain sorghum (For seeds)	1007.00.0000
43	Buckwheat...	1008.10.0000/90.000
44	Foxtail millet (For seed)	1008.20.1000
45	Other cereal flours (Excl. rice, rye, maize,wheat, and meslin flour)...	1102.90.9000, 1103.11.0000...
46	Potatoes (Flour and meal)...	1105.10.0000/20.0000
47	Malt (Not roasted)...	1107.10.0000/20.1000
48	Wheat Starch...	1108.11.0000/19.90000...
49	Potato Starch...	1108.13.0000, 3505.10.3000...
50	Manioc (Cassava) starch	1108.14.0000
51	Sweet potatoes starch	1108.19.1000
52	Soya beans (Whether or not broken)	1201.00.0000

(계속)

번호	품목명	HS Code
53	Groundnuts ...	1202.10.0000/20.0000...
54	Sesamun seeds	1207.40.0000
55	Raw ginseng...	1211.20.1100/1210.....
56	Forage products (Fodder roots)...	1214.90.1000/9000..
57	Sesame oil and its fractions	1515.50.0000
58	Lactose	1702.10.1000
59	Artificial honey	1702.90.1000
60	Orange juice (Frozen /Concentrated)...	2009.11.1000/9000..
61	Undenatured ethyl alcohol, excl.	2207.10.90.00
62	Flours, meals, and pellets, of meat or meat offal (Not edible)	2301.10.1000
63	Oil-cake and other solid residues of sesamun seeds	2306.90.1000
64	Other mixed feeds (Milk substitute ...or more dairy product)	2309.90.1090
65	Supplementary feeds (... inorganic substances or minerals) ...	2309.90.2010/2020...
66	Silk-worm cocoons suitable for reeling	5001.00.0000
67	White silk	5002.00.1020/1030/1040/1050

참고: '95년이후 5, 6, 60 및 67번은 관세율 쿼터에서 제외됨
출처: WTO, 2000, Tariff and other quotas(G/AG/NG/S/7)

녹색상자(*green box*)

허용된 보조 조치는 교역을 왜곡시키지 않거나, 최소한의 왜곡이 있는 조치이다. 이러한 보조조치는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전가하지 않는 정부 자금에 의한 조치이어야 하며, 가격 지원과 연계되지 않아야 한다. 일부 국가는 이러한 지원이 생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파랑상자(*blue box*)

파랑상자 보조는 모든 생산과 연계된 보조는 감소되어야 하거나, 무시할 수 있는 양(*de minimis*)이하이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보조 규정에 예외를 말한다. 일부 회원국은 이러한 파랑상자의 폐지를 주장하는 한편, 다른 일부는 이러한 보조는 농업 재편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조항(*Peace Clause*)

평화조항은 WTO농업협정 13조의 내용으로, 국내 및 수출보조 감축이 동 협정의 요건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각 회원국의 양허표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협정이 행기간(선진국 6년, 개도국 10년)동안 보조금규정에 의한 규제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화조항은 2003년에 완료하도록 되어 있어 이의 연장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식품안전(*Food Safety*)

무역의 원활화로 인하여 안전하지 못한 식품을 구매하도록 소비자에 강요한다는 비난을 극복하기 위한 양해(*understanding*)를 개발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UR이후에 유전자재조합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고려, 광우병과 같은 새로운 질병의 발생 및 다이옥신과 같은 오염물질 등의 새로운 사안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된 바 있다. 모든 회원국은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에는 합의하였으나, 이러한 논의는 SPS위원회 또는 TBT위원회에서 논의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소비자정보와 표시(*Consumer Information and Labelling*)

일부 국가의 소비자는 교역과 관련 없는 동물복지(*animal welfare*) 또는 유전자재조합여부와 같은 정보에 대하여 알고자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는 임의 또는 강제 표시로서 전달될 수 있으며, 이러한 표시는 새로운 무역장벽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소비자에게 그들이 찾고있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주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하여 일부 회원국은 이러한 사항이 농업협상에서도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한편, 일부는 이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다.

일부 회원국은 이러한 표시를 증명하기 위하여 많은 자원이 필요하며, 개발도상국은 능력 부재 등의 사유를 들어 무역 장벽임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선진국은 개발도상국에 기술지원을 하되, 이러한 표시에 부적절한 제품이라도 수입이 가능하여야 하며,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경

환경은 농업에 긍정·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농업 없이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없으며, 일부 회원국은 자국의 농업은 지원이 없으면 지탱하지 못함을 설명하고, 녹색상자 보조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하여 일부 회원국은 환경문제는 환경위원회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또한, 일부 회원국은 녹색상자 보조의 기준에 대하여 다시 검토하여야 함과 기준을 완화하여 환경보호를 위한 지원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일부에서는 이러한 지원이 환경보호가 아닌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고 현행유지 또는 강화가 바람직함을 주장하고 있다.

무역특혜(Trade Preferences)

무역특혜는 국가간 불균형적인 발전을 보상하기 위하여 최혜국 대우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것으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모두가 인정하여 UR전에 이미 Enabling clause가 채택된 바 있다. 일부 국가는 관세의 점진적인 하락으로 인하여 이러한 특혜가 축소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식량지원(Food aid)

식량지원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중요함을 인지하였으나, 식량지원으로 인하여 국내생산기반의 파괴 등이 일어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곳에 적절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식량지원이 수출보조와 관련될 수 있다는 부정적 영향을 축소하기 위하여는 농업협정 제10조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대두되었다.

개발도상국(developing country)의 활동

개발도상국들은 농업협상에서 매우 활동적으로 일부 개발도상국들은 상호 협력하여 그들을 부르는 이름을 붙이기도 하였다. 예로, 17개 국가로 이루어진 케언즈그룹 중 14개 국가는 개발도상국이다. 이와 더불어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명확한 차이를 주장하는 아프리카 그룹(African Group)과 아세안(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등이 활발히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또한, 스와질란드, 말리, 인도, 모로코, 터키, 이집트 및 나미비아 등은 개별 국가로 활발한 의견을 제출하고 있다.

많은 개발도상국가들은 그들의 농업생산품의 수출이 높은 관세 때문에 어려움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최빈개발도상국은 선진국의 무역장벽이 너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어 자국에 대한 특혜가 감소하여 자국상품의 수출 기회가 없어지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식품 수입 개발도상국에 관한 결정, 중앙관리체제에서 시장체제로 전환하는 국가에 대한 대우, 농업의 비교역적 역할, 지적재산권과 연계하여 제품명에 대한 지명 부여(예: 샴페인, 코냑, 알마냐 등) 등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으며, 상자의 개발, 단일품목생산자, 특별 및 차등 대우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다.

4.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서비스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협정)의 개정도 농업협상과 같이 2000년 BIA로서 개시되었다. 그러나, 농업협상보다는 협상의 진전이 빨라 2001년3월 이미 협상방식이 합의된 바 있다(Guidelines for the Scheduling of Specific Commitments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GATS), S/L/92).

GATS 협정에서의 서비스의 유형은 UN에서 제품의 물리적 특징 또는 제공되는 서비스의 성질을 기본으로 정한 CPC(Central Product Classification)분류에 따르고 있다. GATS 협정의 적용범위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어, 식품산업과 관련하여도 많은 종류의 서비스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유통서비스, 식당 및 호텔서비스 등의 서비스는 식품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R&D, 설비임대, 광고, 시장조사, 자문, 금융, 분석, 포장,

전시회, 교육·훈련, 운송 등의 서비스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을 생각된다.

GATS협정에서는 위의 서비스의 종류이외에도 제공형태에 따라,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 예: 해외에 전화 등을 통한 자문),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 예: 지사 설립) 및 자연인의 주재(presence of natural person, 예: 비자, 자격증 등)의 4종류로 나누고 있다.

우리나라는 UR당시 유통서비스 시장은 이미 상당부분 개방하고 내국민과 차별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한 바 있으며, 호텔 및 식당 서비스도 설립에 대하여 완전히 개방한 바 있다. 따라서 금번 협상에서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하여 개방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5. 비농산물 분야의 시장접근 및 비관세장벽 논의

비농산물 분야의 시장접근

2000년에 시작된 농업협정과 서비스협정을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 대한 재협상이 금번 도하에서 시작되었다. 따라서, 비농산물 분야의 시장접근에 대한 논의는 2002년 1월1일 개시되었으며, 종료는 2005년 1월 1일까지이다.

비농산물에 포함되는 품목은 WTO 농업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대부분의 식품첨가물,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 기구·용기·포장 등이다. 이들 품목의 관세 및 비관세장벽의 감축 또는 철폐에 대한 협상은 개발도상국과 최빈개발도상국의 관심 품목을 위주로 작업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우선 어떻게 관세를 감축할 것인가를 합의하여야 할 것이다. 동경라운드('73년-'79년)에서는 합의된 공식에 의하여 관세를 인하하였으며, 우루과이라운드에서는 품목별로 협상하였다. 또한 이러한 작업문서에는 최빈개발도상국의 능력개발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평균관세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품목은 첨두관세(tariff peak)를 유지하여 무역을 제한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15%이상의 관세는 첨두관세로 보는 경향이 있다.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작업으로는 포도주 또는 증류주의 명칭에 사용되는 지역명(또는 국가 이름)의 등록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이 논의는 2003년 제5차 WTO 각료회의 이전에 완료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이와 더불어 다른 품목에 대한 논의로의 확대 여부, 동·식물에 대한 특허 등록 가능성 여부와 UN 생물다양성협약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검토하도록 지시하였다.

SPS조치

SPS조치에 대하여는 새로운 작업보다는 기존 협정의 이행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언급되었다. 새로운 위생 조치를 도입하고자할 때에는 가능한 경우 개발도상국에 대하여 최소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합의되었다. 이는 위생조치 이외에도 무역제한 가능성이 있는 기술규격 설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모든 기준·규격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6개월 이상의 유예기간 부여 또는 그러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개정으로 인하여 규격 완화가 될 때에는 불필요하게 유예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우리나라 제품과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수입제품에 대한 규격적용에 대한 역차별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SPS협정 제4조는 동등성(equivalence)에 관한 것으로 수입국은 수출국의 위생 조치가 자국과 동일하지 않더라도 조치의 국민 보호 효과가 동일한 수준으로 판정되는 경우 동등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SPS위원회에서는 2001년 10월 동등성에 대한 결정문을 합의한 바 있다. 각료회의에서는 결정문에서 합의된 구체적인 논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지시하였다. 또한, 결정문에서 SPS위원회는 협정의 이행에 대하여 매4년마다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다.

6. 무역협상위원회(TNC)

무역협상위원회는 도하각료회의의 결과 도하개발아젠다의 진척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이다. 제1차 회의는 2002년1월 개최되어 의장선출, 하부위원회 구성 등의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논의를 하였으나 완전한 합의는 아직 이루지 못하였다.

6.1 위원회 구성

의 장

WTO 사무총장이 도하협상 종결 예정일인 2005.1.1까지 TNC 의장직을 수임하기로 합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분야별 협상기구

표 3에서 보는바와 같이 협상별 협의위원회를 구성하였다. 분야별 협상 기구 의장 임기는 5차 각료회의까지 수임기로 하고 5차 각료회의시 모든 개별기구 의장직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회의 개최 빈도

2~3개월마다 TNC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시 추가 개최기로 하였다.

6.2 위원회 운영

일반이사회의 권한

TNC 및 산하협상기구는 일반이사회 휘하에 설치하며, 일반이사회는 WTO 전체 작업계획을 책임지며, TNC는 일반이사회 정례회의마다 협상진행 상황을 보고하도록 한다.

투명성과 협상과정

모든 회원국들의 효과적인 참여를 위해 협상과정에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TNC 회의록은 신속하게, 3개 공식어로 동시에 회람되어야 하고, 대표단을 파견할 여력이 크지 않은 국가를 고려하여, 각 개별 협상은 가능한 겹치지 않도록 한다.

TNC와 분야별 협상기구 의장

의장은 의사결정 과정과 협의과정에서 투명성과 전회원국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의장은 회원국간 합의(consensus)를 촉진시키는데 목표를 두어야 하며 협상과정을 통해 합의를 담은 문안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의장은 상부기구 보고 시 합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하며, 합의가 가능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안별 상이한 입장을 반영하여야 한다. TNC의장은 개별 협상단의 의장들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표 3. 분야별 협상기구

협상의제		담당기구
농업		농업위원회 특별회의
서비스		서비스이사회 특별회의
비농산물시장접근		시장접근 협상그룹(신설)
지 적 재 산 권	포도주 및 증류주 지리적표시 다자등록시스템 설치 협상	TRIPS 이사회 특별회의
	CBD와 TRIPS 관계, 전통지식 등 검토의제	TRIPS 이사회
WTO 규범(반덤핑, 보조금 등)		규범협상그룹(신설)
분쟁해결 양해		분쟁해결기구 특별회의
무역과 환경		무역환경위원회(CTE) 특별회의

7. 맺음말

이상으로 WTO 도하개발아젠다에 의한 현재의 작업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대외의존도가 높으나 소규모 경제로서 협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는 다자무역체제의 강화를 통하여 수출 확대 및 안정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유리하다. 특히, 가공식품을 포함한 공산품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WTO 각 회원국이 관세를 인하¹⁰⁾할 것이므로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이 보다 용이해질 것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취약한 농산물, 서비스분야의 추가적인 시장개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식품 산업체에게는 위기와 발전 가능성의 두가지 측면을 제공하고 있다. 즉 가공식품을 포함한 관세의 인하로 인하여 국내시장에서 외국산 제품과 경쟁이 치열해질 수 있으며, 산업의 원료인 농산물을 보다 낮은 관세로 수입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 산업체에서는 정부에 협상에 필요한 충분한 근거와 논리를 제공함으로써 발전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시장뿐만이 아니라 세계시장 개척을 염두에 두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에 대한 새로운 협상에 대하여 경우별로 논리를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WTO 협상은 다자 협상이므로,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어떠한 형태로의 결론을 도출할 것이므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한 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즉, 관세의 경우 아직 협상방식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협상방식에 따라 산업체의 주도 아래 식품산업체의 입장을 마련하고, 가장 바람직한 협상방식을 선택하여, 그 협상방식이 국가 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나아가 WTO에서도 채택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비관세 장벽의 경우에는 식품업계가 세계시장에 진출하는데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의견을 사전에 마련하고, 적절한 시기에 입장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견은 단순히 우리나라 국내 산업 보호 또는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닌, 국제경제 발전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무역 자유화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객관적이고 논리적이어야 하며,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 그 논리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의견 개진과 논리 개발을 위하여 산업체, 정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이 협력하여 국제통상과 협상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통상과 협상 전문가는 단시일의 교육·훈련으로 양성되지 않으므로 많은 경험의 국내 관계자를 포함

10) UR 당시 평균관세율 33% 인하

하여 국제기구 또는 제외국의 협상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구축하는 것도 방법중의 하나 일 수 있다. 이러한 전문가는 이번 WTO 도하개발아젠다 뿐만 아니라 향후 있을 다음의 라운드, 다른 국제기구에의 대응, 양자협상 나아가서는 개별 기업의 해외 사업 지원 등 많은 영역에서 활동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전문가가 충분히 확보 되면, 우리나라는 국제기구의 논의에서 지금의 일부 국가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수동적 위치에서 우리의 입장을 강하게 요구하고, 새로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능동적 위치로 전환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나은 기업환경을 만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8. 참고문헌

- WTO 협정문 (1995)
- WTO, Ministerial Declaration (문서번호 WT/MIN(01)/DEC/1, 2001)
- WTO, Implementation-related issues and concerns-Decision (문서번호 WT/MIN(01)/DEC/17, 2001)
- WTO 홈페이지, The Doha implementation decision explained (2002)
- WTO 홈페이지, The Doha Declaration explained (2002)
- WTO, WTO Agriculture negotiations, The issues, and where we are now (2002)
- WTO, Domestic Support (문서번호 G/AG/NG/S/1, 2000)
- WTO, Green Box Measures (문서번호 G/AG/NG/S/2, 2000)
- WTO, Export Subsidies (문서번호 G/AG/NG/S/5, 2000)
- WTO, Tariff and Other Quotas (문서번호 G/AG/NG/S/7, 2000)
- WTO, Tariff Quota Administration Methods and Tariff Quota Fill (문서번호 G/AG/NG/S/8/Rev.1, 2001)
- WTO, Summary Report on the Meeting of the Special Session (문서번호 G/AG/NG/R/1-5, 2000-2001)
- WTO, Statement by the Chairman of the General Council (문서번호 TN/C/1, 2002)
- 보건복지부, “WTO 도하개발아젠다 보건복지분야 제1차 대책위원회·분과위원회 합동회의” 회의자료(2002)